

대구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2나331851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2나331851 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 11. 16 선고 2020가단3004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씨

담당변호사 최원길

피고, 피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박현민, 이기광, 배종수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수, 정수영

변론종결 2023. 8. 24.

판결선고 2023. 9. 21.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 11. 16. 선고 2020가단30046 판결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1. 가. 피고 B와 유한회사 D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17. 체결한 매매예약 및 위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30. 체결한 매매예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C와 유한회사 D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17. 체결한 매매예약 및 위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28. 체결한 매매예약을 각 취소한다.
2.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18. 8. 22. 접수 제48279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위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2017. 5. 30. 접수 제26257호로 경료한 지분일부(32,956분의 1,197.04) 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18. 8. 22. 접수 제48280호로 경료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위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2017. 8. 28. 접수 제43524호로 경료한 지분일부(32,956분의 15,529.43) 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갑 제7호증의 1 내지 17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에서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일, 판사 손윤경, 판사 최서은

별지